

논문 표절검사 시스템 활용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 라 한다)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14조 제4항에 의거 학위청구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2조, 제4조에 따른 학위논문으로 한다.

제3조(논문 표절검사 시스템 활용) ① 제2조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대학원 학위수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대학원에서 도입하여 운영하는 ‘논문 표절검사 시스템’ 으로 자율 검사하여 ‘표절(유사도) 검사 등급’ 을 확인 후 ‘논문 표절 검사 결과확인서’ 를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절(유사도) 검사등급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양호 수준 : 0% 이상 ~ 10% 미만
2. 유의 수준 : 10% 이상 ~ 15% 미만
3. 의심 수준 : 15% 이상 ~ 20% 미만
4. 위험 수준 : 20% 이상

제4조(검사 등급에 따른 자율조치) 제3조에 따라 논문의 ‘표절(유사도) 검사 등급’ 을 확인한 학생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3조 제2항에 의한 검사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율 조치한다.

1. 양호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하여 검사결과를 논문에 첨부하여 활용
2. 유의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검사결과를 양호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 검사결과가 ‘논문 표절검사 시스템’ 의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검토 내용을 검사결과에 기술하여 활용

3. 의심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검사결과를 양호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 검사결과가 유사도 검사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아 검토내용을 검사결과에 기술하여 활용

4. 위험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

제5조(논문 표절 검사 결과확인서 제출) 제2조에 의거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한 대학원생이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4조에 따라 자율 조치한 ‘논문 표절 검사 결과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자는 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 표절검사 결과보고서’ 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 표절검사 시스템 도입 및 운용) 제3조에 따른 논문 표절검사 시스템의 활용을 위하여 대학원장은 대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하며 대학원 학생 및 교직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기타 논문 표절검사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문 표절검사 결과보고서

논문명				
작성자	대학원명		학위과정	
	학 과		전 공	
	학 번		성 명	(서명)
검사결과 ²⁾	검사등급 (표절률)	% (1) □양호, □유의, □의심)수준		
	유의 수준인 경우 검토내용 (본인기술)			
	의심 수준인 경우 검토내용 (논문지도교수)			
검토 확인결과 (논문지도교수 작성)	검토 확인내용 :			
	확인자			(서명)
첨부물	논문 표절 검사 결과확인서(발급형태 : 기본보기) 1부 첨부			

* 작성요령 : 1) 구분 : 해당 종류에 √ 표시 기입. 2) 검사결과 기술 : 필요시 별지 사용

※ 표절(유사도) 검사등급

- 양호 수준 : 0% 이상 ~ 10% 미만
- 유의 수준 : 10% 이상 ~ 15% 미만
- 의심 수준 : 15% 이상 ~ 20% 미만

강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